

# 감사안전실

- 안전책임관

# 일 반 현 황

## □ 조 직 : 1 실

부서명	주 요 업 무
감사안전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윤리·인권경영 시행, 부패·비리 예방활동 시행</li> <li>◦ 내부감사(일상감사, 원가심사, 시설감사 등) 시행 및 외부감사 수검</li> <li>◦ 공단 안전관리 총괄</li> <li>◦ 기술업무 및 안전, 시설분야 감사</li> <li>◦ 사업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 (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)</li> <li>◦ 부서 및 개인 성과관리, 임원경영성과계약 등</li> </ul>

## □ 인 력 : 정원 5명[현원 4명]

(기준일 : '21. 2. 1.기준)

합 계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5(4)	-	-	1(1)	1(1)	1(1)	2(-)	-	-(1)

# 주요사업 목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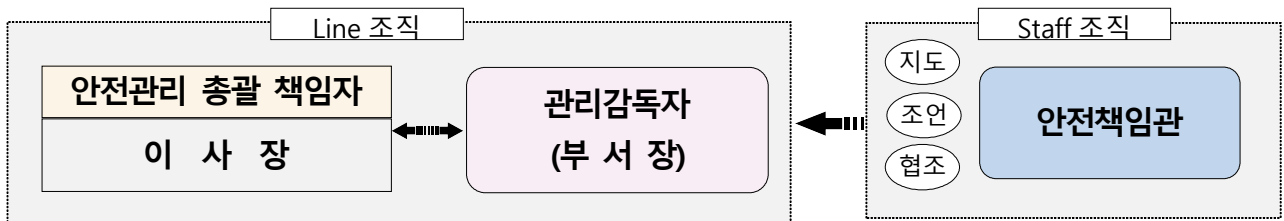
연번	주요사업	구분	쪽
1	공단 안전중심 경영체계 확립	계속	6
2	포스트 코로나 『뉴노멀』 복무관리체계 구축	신규	8
3	인권의식 고착을 위한 인권경영 체계화	계속	9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

## □ 사업개요

- 최근 공공분야 재난안전사고로 국민의 생명·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요구
- 공단의 사업특성을 감안한 안전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안전에 관한 내부규정 정립과 자체 점검체계 마련으로 안전경영 실현

## □ 추진계획

## ○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



- (안전기본계획) 사업장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
  - (안전관리규정) 안전관리조직과 그 직무, 사고 조사 및 대책, 안전사고 사례집,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규정을 정비·운영
  - (안전인력 역량강화)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인력 및 전문성 강화
- 시설물 안전을 위한 조치
- (자체점검 강화) 사업장별 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 및 개선 계획수립 후 조치
    - ※ 현장 근로자가 시설물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사항(개인보호구 착용, 음주 여부 등)에 대한 사전 점검
  - (위험성 평가) 시설물 설비 등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
    - 도급·발주 시 계약 조건에 위험성 평가 점검을 포함하여 통합관리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5단계
사전 준비	유해·위험 요인 파악	위험성 추정	위험성 결정	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
○ **근무자 안전 보호 조치**

- (작업근무자 보호) 위험시설물 단독작업 제한 등 근무자 보호제도 운영
  -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 및 신입직원(6개월 미만 근속) 단독작업 제한
  - 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 시 현장 근무자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운영
- (현장 밀착형 안전강화) 담당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'작업 중지 요청제' 실시

○ **안전인식 확립 및 홍보**

- (안전교육) 경영진, 안전담당자, 현장 근무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실시
  - 업무변경 및 위험작업 담당 시 관련 실무현장교육 추가실시
- (안전홍보) 매월 「미리데이(안전점검의 날)」을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정례화

○ **안전관리 기타 추진사항**

- (안전경영위원회 운영) 안전관련 자문기구로 근로자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'안전경영위원회' 운영 :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재난안전비상대책위원회 등
- (안전근로협의체 운영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원·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·운영
- (안전경영 인증)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운영

※ '계획수립-실행-점검-개선' 과정을 통해 지속적 안전보건 개선을 지원하는 시스템


□ **소요예산 : 16,250천원 (공단예산)**

□ 사업개요


-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‘언택트’ 중심의 新 복무관리·감사시스템 등을 개발·운용함으로써 ‘뉴노멀’ 감사시스템 도입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.

□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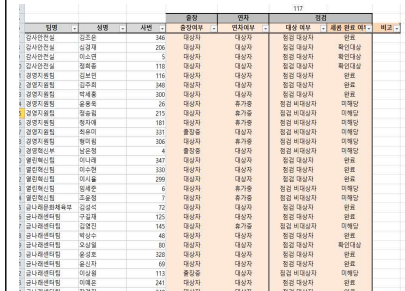
- 비대면 업무 활성화에 대비한 ‘언택트’ 감사체계 정립
  - 정부의 ‘비대면 산업 육성’으로 새로운 업무방식의 보편화가 예상됨에 따라 변화하는 근무형태의 반영을 위한 新 감사체계를 도입·발전시키고자 함
  - 보유 인프라(지문인식 프로그램)를 활용한 불시 비대면 복무점검방식 도입



정위치 근무 지문날인



BAS 시스템 추출



대상자 추출

○ 직장 내 감염병 ZERO 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통제 내실화

- 해외방문 시 행선지(도시) 기재 의무화, 위생감사 신설 등을 통한 유행성 질병 차단으로 질병관리 내부통제 체계구축

소속	감사만전실	감사만전실	심검제
구분	종류	공제	근거
추가	면차	Y	위업규정 제30조(연가일수)
기	추가	Y	위업규정 제30조(연가일수)
사	추가	Y	위업규정 제30조(연가일수)
유	추가	Y	위업규정 제30조(연가일수)
결재서명	추가	Y	위업규정 제30조(연가일수)
	추가	Y	위업규정 제34조(별역, 특)
	추가	Y	위업규정 제30조(연가일수)

예시) 해외방문 행선지 기재 의무화

□ 기대효과

- 다가 올 재택근무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
-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1등 공기업으로써의 신뢰도 제고

□ 소요예산 : 비예산

### □ 사업개요

-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시스템을 조성하고 인권존중 의식전파를 통해 인간의 가치중심문화 조성강화

### □ 추진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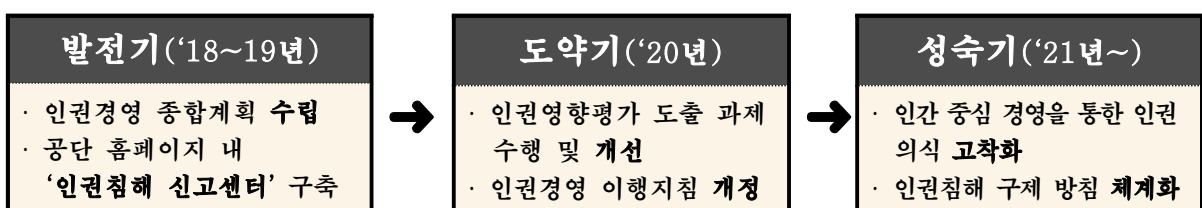
-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및 구제방침 규정화 ..... (2020. 1월)
  -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
-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경영 문화 조성 노력 확대 ..... (2020. 8월)
  - 협력업체 계약 시 인간의 권리존중을 위한 기본사항 준수 서약제도 도입
- 공단 직원의 인권보호 근무환경 개선 ..... (2020. 9월)
  - 비상대응 안전장치 마련과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핸드북 배포

### □ 문제점 및 개선방안

- 피해자 발생 시 전문기관 상담 조치 등의 지원 필요
  -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·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피해자 신고센터 및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제 시스템의 지원강화 필요
- **개선방안** 피해자에 대한 구제 시스템 구축
  - 피해자 지원 및 대처를 위한 사내 고충상담과 전문기관 상담 지원 체계 마련
  -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핸드북 배포

### □ 추진계획

- 인권경영 추진 체계



○ **인권의식 강화와 구제 방침 체계화**

- 인권침해 신고센터 홍보 및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시스템 구축
- 인권 필수교육 실시와 매년 12월 10일 『인권의 날』 행사

○ **인권영향평가 정기 실시**

- 인권경영 시행 상황 검토 및 개선 활동과 대내·외 공유를 통한 환류 실행

**소요예산 : 500천원 (공단예산)**